

# 문화재보존의 기본방향 (文化在保存의 基本方向)

鄭 在 鍾

<文化財管理局 文化財企劃官>

## 目 次

- |                 |                |
|-----------------|----------------|
| 一. 文化財保存의 概念    | 三. 文化財保存上의 問題點 |
| 1. 文化財의 定義      | 1. 文化財被害의 要因   |
| 2. 文化財保護法上의 文化財 | 4. 産業化와 文化財保存  |
| 3. 文化財保存의 意義    | 四. 文化財保存의 基本方向 |
| 二. 文化財의 特性      | 1. 基本原則        |
| 1. 類型上 特性       | 2. 保存方案        |
| 2. 法律上 特性       |                |

## 一. 문화재보존(文化在保存)의 개념(概念)

### 1. 문화재(文化財)의 정의(定義)

문화재(文化財)란 말은 독일어(獨逸語) “Kulturgüter 또는 Kulturvermögen”, 영어(英語)로는 “Cultural Properturels”, Cultural Assets”, 불어(佛語)로는 “biens culturels”로서 기술(記述)한다. 모두 다같이 그 뜻하는 것은 민족문화유산(民族文化遺産)으로서 보존(保存)할만한 가치(價値)가 있는 것이란 말이다. 따라서 문화재(文化財)란 보존(保存)할 만한 가치(價値)가 있는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유산(遺産)이다.

그러나 문화재(文化財)란 인류문화(人類文化)의 보존보호(保存保護)를 위한 문화정책적(文化政策的) 개념(概念)으로서 근대이전(近代以前)의 사회(社會)에서는 문화재(文化財)의 대상(對象)은 존재(存在)하고 있었으나 문화재(文化財)란 개념(概念)자체는 성립(成立)하고 있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1950년대(年代)까지는 문화재(文化財)란 용어(用語) 자체(自體)가 쓰여지지 않았고 보물(寶物)·고적(古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라든가 유적(遺蹟), 유물(遺物)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었다. 충북대(忠北大)의 오세탁교수(吳世卓 敎授)에 의하면, 1949年 일본(日本)이 유명(有名)한 법룡사(法隆寺)의 금당벽화소실(金堂壁畵燒失)이라는 충격적(衝擊的) 사건(事件)을 계기(契機)로 마련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입안과정(立案過程)에서 이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用語)가 사용(使用)되고 이듬해인 1950

年 5月 30日 동법(同法)이 제정공포(制定公布)됨으로서 공식적(公式的)으로 사용(使用)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日本)의 영향을 받아 학계(學界)나 행정기관(行政機關)에서 조금씩 사용(使用)하기 시작하다가 1961年 10月 2日 각령(閣令) 第181號에 의거한 문화재관리국직제공포(文化財管理局職制公布)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用語)를 처음으로 공식 사용(公式使用)하였고, 1962年 1月 10日 법률(法律)第961號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제정공포(制定公布)되면서 일반화(一般化)되었다고 한다.

국어사전(國語辭典)에 의하면 문화재(文化財)란 「인간(人間)이 문화활동(文化活動)의 소산(所産)으로서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 또는 「문화가치(文化價値)가 있는 사물(事物)」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좀 넓은 의미(意味)에서의 포괄적(包括的) 해석(解釋)이지만 그래도 명승(名勝)이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까지를 문화재(文化財)속에 포함(包含)시키는데 대한 의문(疑問)이 제기(提起)될 수 있으며, 반대(反對)로 인류(人類)의 오랜 문화활동(文化活動)의 소산(所産)으로서 전승(傳承)되어오는 사물(事物)내지 사상(事象)으로서 법적(法的) 보호(保護)의 대상(對象)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예를 들면 지명(地名)이나 방언(方言) 또는 재배작물(栽培作物)로서의 인삼, 담배등이 그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문화재(文化財)라고 통상적(通常的)으로 지칭(指稱)할 때에는 광의(廣義)의 문화재중(文化財中) 협의(狹義)의 문화상(文化上) 가치(價値)가 있는것, 즉 역사상(歷史上), 학술상(學術上), 종교상(宗教上), 관상상(觀賞上) 기타(其他) 생활문화(生活文化)의 추이(推移)를 가리킬 수 있는 실체(實體)로서 우리민족(民族) 전체(全體)의 정신적(精神的) 작위(作爲)에 의한 가치(價値)가 부여된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解釋)할 수 있으며,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서도 이 협의(狹義)의 뜻으로 사용(使用)하고 있다.

## 2. 문화재보호법상(文化財保護法上)의 문화재(文化財)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최초 문화재보호법규(文化財保護法規)는 1933年 일제(日帝)에 의해 제정(制定)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었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은 앞에서 밝힌 대로 1962년에 이르러서였으며, 그후 82년까지 7회에 걸쳐 부분부분(部分部分) 손질을 하여 시행(施行)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동법제(同法) 第1條를 보면 「이 법(法)은 문화재(文化財)를 보존(保存)하여 이를 활용(活用)함으로써 국민(國民)의 문화적(文化的) 향상(向上)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人類文化)의 발전(發展)에 기여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문화재보존(文化在保存)으로 국민(國民)의 문화적(文化的) 향상(向上) 및 세계인류문화(世界人類文化)의 발전(發展)까지도 도모(圖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바탕에는 인간사회(人間社會)의 당연(當然)한 성격(性格)으로서 그의 문화생활(文化生活)을 고도(高度)의 것으로 건설(建設)하기 위해서는 자연적(自然的)인 물질소재(物質素材)에 인간(人間)의 문화행위(文化行爲)가 첨가(添加)된 문화재(文化財)의 존재(存在)를 확인(確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법(同法)第2條第1項에서는 문화재(文化財)를 넷으로 나누어,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기념물(記念物)·민속자료(民俗資料)로 정의(定義)를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유형(有形)·무형(無形)의 두 문화재(文化財)는 역사상(歷史上) 또는 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으로서 이것을 구체적(具體的)으로 든다면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건조물(建造物)·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古文書)·회화(繪畫)·조각(彫刻)

· 공예품(工藝品)등 유형(有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 및 고고자료(考古資料)이며,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라 함은 연극(演劇)·음악(音樂)·무용(舞踊)·공예기술(工藝技術)등 무형(無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을 가리킨다.

또한 기념물(記念物)이라 함은 패총(貝塚)·고분(古墳)·성지(城址)·궁지(宮址)·요지(窯址)·유물포함층(遺物包含層) 등의 사적지(史蹟地)로서 역사상(歷史上)·학술상(學術上)가치(價値)가 큰 것과 경승지(景勝地)로서 예술상(藝術上)·관상상(觀賞上) 가치(價値)가 큰 것 및 동물(動物)·식물(植物)·광물(鑛物)·동굴(洞窟)로서 학술상(學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을 가리키며, 민속자료(民俗資料)라 함은 의식주(衣食住)·생업(生業)·신앙(信仰)·연중행사(年中行事) 등에 관한 풍속(風俗)·관습(慣習)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衣服)·기구(器具)·가옥(家屋) 등으로서 국민생활(國民生活)의 추이(推移)를 이해(理解)함에 불가결(不可缺)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도 전술(前述)한 문화(文化)의 개념(概念)을 가지고 설명(說明)이 어려운 점은 자연물(自然物)까지를 포함(包含)한다는 규정(規定)이다. 그러나 인간(人間)의 여러 활동(活動)은 그 인간(人間)이 처(處)해 있는 역사적(歷史的)·문화적(文化的) 또는 사회적(社會的)인 환경(環境)과 자연적(自然的) 환경(環境)의 영향을 받으며 행해지는 것이고 그 상호관련(相互關聯)은 긴밀(緊密)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른바 문화적(文化的)인 활동(活動)과 그 성과(成果)인 것과의 관계(關係) 또는 민속적(民俗的)인 사물(事物)과 자연환경(自然環境)과의 사이에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相關關係)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人間) 및 그의 활동(活動)을 매개(媒介)로 한 문화(文化)와 자연(自然)의 결합(結合)이 성립(成立)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關係)는 예술(藝術)의 발전과정(發展過程)과 자연(自然) 또는 풍속관습(風俗慣習)과를 생각한다면 이해(理解)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意味)에서 전통문화(傳統文化)를 보존활용(保存活用)하여 국민(國民)의 문화적(文化的) 향상(向上)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人類文化)의 발전(發展)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문화적(文化的) 제활동(諸活動)의 기반(基盤)으로서 자연(自然)을 파악(把握)하고 문화재(文化財)속에 환경(環境)으로서의 자연물(自然物)을 포함하고 있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3. 문화재보존(文化在保存)의 의의(意義)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목적(目的)에서와 같이 문화재보존(文化在保存)은 거시적(巨視的)으로 보아 새로운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조(創造)이지만, 직접적(直接的)으로는 헌법(憲法)에서 규정(規定)한 바와 같이 「국가(國家)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계승발전(繼承發展)과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暢達)에 노력(努力)」하기 위(爲)한 보존활용(保存活用)의 문제(問題)라 하겠다. 따라서 문화재보존(文化在保存)은 적극적(積極的)으로 문화재가치(文化財價値)를 영구보존(永久保存)하고 그것을 문화발전(文化發展)을 위해 활용(活用)하는 데에 그 의의(意義)가 있으며, 그 이념(理念)의 기초(基礎)에는 문화국가건설(文化國家建設)과 문화(文化)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주의(國際協力主義)가 떠받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국가(國家)에 의한 체계적(體系的) 사업(事業)으로서의 문화재보존(文化在保存)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 역사(歷史)는 길지 않다. 중세이후(中世以後) 교황청(教皇廳)이 중심(中心)이 되어 보존사업(保存事業)을 행해온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영국(英國)·독일(獨逸)·프랑스 등 모두 18세기(世紀) 이후(以後)이다. 특히 법제도면(法制度面)으로 본다면 가장 빠른 영국(英

國)에서조차 고대기념물보호법(古代記念物保護法)(Ancient Monuments Protection Act)이 제정(制定)된 것은 1882년의 일이고 기타(其他) 나라에 있어서는 대개 20세기(世紀)에 들어와 문화재보존사업(文化在保存事業)을 체계적(體系的)으로 전개(展開)하기에 이르렀는데 주로 그 계기가 된 것은 정치적(政治的) 혁명(革命)과 산업혁명(產業革命)에 의한 손상(損傷)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보다 근본적(根本的)인 문제(問題)로서 근대적(近代的) 국민국가(國民國家)의 형성(形成)에 문화재(文化財)가 단결(團結)의 상징(象徵)으로서 큰 역할(役割)을 담당(擔當)했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현재(現在) 각국(各國)이 문화재(文化財)의 해외유출(海外流出)을 방지(防止)하고 있는 사실(事實)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화재(文化財)라고 하는 것이 단순(單純)한 예술적(藝術的)· 학술적(學術的) 가치(價値)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文化財)가 창조(創造)되어 오랜 세월(歲月)을 두고 보존(保存)되어, 온 나라의 국민(國民)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생활감정(生活感情) 또는 역사적(歷史的) 가치(價値) 등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것의 해외유출(海外流出)을 극력거부(極力拒否)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문화재(文化財)는 만들어진 그 환경(環境)과 역사성(歷史性)을 전제로 하여 민족(民族)의 문화유산(文化遺産)으로서의 성격(性格)이 강해지는 것이며, 그것은 그것이 존재(存在)해 있었던 환경(環境)속에서 보존(保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二. 문화재(文化財)의 특성(特性)

### 1. 유형상(類型上) 특성(特性)

우리나라의 역사를 개관(概觀)하여 볼 때 4세기(世紀)후반(後半) 이 땅에 상륙(上陸)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國民)의 정신세계(精神世界)를 지배(支配)하고 있는 불교(佛敎)의 존재(存在)를 무시(無視)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천사(一千四)·오백년(五百年)의 연륜(年輪)을 가지고 우리 민족(民族)과 숨쉬어온 불교(佛敎)는 우리 문화(文化)의 주된 줄기로서, 문화재(文化財)중 불교문화재(佛敎文化財)가 주류(主流)를 이루어오게 된 것은 당연한 소치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재(文化財)는 자연 오랜 불교문화(佛敎文化)로서 사찰(寺刹)을 중심(中心)으로 한 것이 많으며, 그 다음이 지배계층(支配階層)의 분묘(墳墓)와 거기에서 출토(出土)되는 매장유물(埋藏遺物)이 층(層)을 이루고, 다음에 외적(外敵)의 침략(侵略)에 맞서 항쟁(抗爭)하여왔던 전적지(戰蹟地) 등이 많이 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유교(儒敎)는 이념(理念)의 승화(昇華)가 강(強)한 종교(宗教)·정신적(精神的) 문화(文化)라기보다도 생활(生活)의 기초(基調)인 윤리(倫理)·철학(哲學)에 기초(基礎)를 두었기 때문에 문화재(文化財)를 많이 남기진 못하였으나 현재(現在)는 이러한 개념(概念)도 많이 바뀌어 이러한 사실(事實)의 전승(傳承)을 알 수 있는 방향(方向)으로 확대(擴大)하기 때문에 문화재(文化財)의 범주(範疇)가 좀 넓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문화재(文化財)의 특성(特性)으로는 비교적(比較的) 규모(規模) 있는 문화재(文化財)는 그 당시 사회(社會), 지배계급(支配階級)에 의해 창조(創造)되어 왔고 국가적(國家的)인 역사(力事)나 종교적(宗教的)인 것이 대부분(大部分)이며 일반(一般) 서민계층(庶民階層)에서는 별다른 유적(遺蹟)·유물(遺物)을 남기지 못했고 일상생활용품(日常生活用品)

活用品)이나 장신구 등 소품(小品)은 분묘(墳墓)에 매장(埋藏)된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가 대부분(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文化財)의 규모(規模)를 살펴보면 거대(巨大)한 규모(規模)의 문화재(文化財)는 적고 대개 소규모(小規模)의 것으로 양적(量的)인 것보다는 질적(質的)인 우수성(優秀性)을 가진 것이 대부분(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소규모(小規模) 부족국가(部族國家)로서 혈연(血緣)과 지연(地緣)으로 엮어진 사회적(社會的) 특성(特性)과 국가(國家)의 재력(財力)이 약(弱)한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재(文化財)에 있어서 사용(使用)된 주요재료(主要材料)를 보면 불교문화재중(佛敎文化財中) 석탑(石塔)·석등(石燈)·고간지주(幢竿支柱) 등은 화강암(花崗巖)으로 되었고 불상(佛像)은 석불(石佛) 또는 금동(金銅) 등으로 사용(使用)되었으며, 건축(建築)은 목조(木造)로서 석재(石材) 및 목재(木材)가 대부분(大部分)이다. 그밖에 분묘매장품(墳墓埋藏品)의 장신구는 금(金)을 많이 사용(使用)했고 도자기류가 많으며, 성곽(城郭)은 석성(石城) 또는 토성(土城)으로 되어있고, 토성(土城)의 경우 대부분(大部分) 판축(版築)하여 쌓았다. 그리고 목재(木材)는 그 수명(壽命)이 비교적(比較的) 짧고 가연성(可燃性) 재료(材料)이므로 고대(古代)의 것은 잔존(殘存)하지 않고 몇개의 고려시대(高麗時代)의 건물(建物)을 제외(除外)하고는 모두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창건(創建) 또는 중창(重創)된 것이며 더구나 수차에 걸친 외침(外侵)으로 많은 것이 소실(燒失)되었고, 훼손(毀損)되어 원형보존(原形保存)이 매우 힘든 상태로 전(傳)하여 왔다.

문화재(文化財)의 지역별(地域別) 분포(分布)를 살펴보면 대부분(大部分) 고대국가(古代國家)가 형성(形成)되어 번성(繁盛)했던 고도주변(古都周邊)에 밀집(密集)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구려(高句麗)가 평양(平壤), 신라(新羅)는 경주(慶州), 백제(百濟)는 서울·공주(公州)·부여(扶餘), 가야(伽倻)는 김해지방(金海地方), 고려(高麗)는 개성(開城), 조선(朝鮮)은 서울지역중심(地域中心)으로 그 시대(時代)의 유물(遺物)·유적(遺蹟)이 많이 산재(散在)하여 있다.

또한 시대적(時代的)으로 보면 신라(新羅)·백제(百濟)·고려(高麗)는 불교문화(佛敎文化)를 찬란히 이루었으며 각지(各地)의 사찰(寺刹)을 중심(中心)으로 한 문화재(文化財)가 많고 다수(多數)의 궁성(宮城)과 성곽(城郭), 분묘(墳墓), 사적(史蹟) 및 기타(其他) 유적(遺蹟)이 많이 남아있으며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거의 궁궐건축물(宮闕建築物)과 성곽(城郭)이 주(主)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석조(石造) 및 목조(木造) 문화재(文化財)가 문화적(文化的) 특성(特性)에 따라 지역별(地域別)로 분포(分布)되어 있다. 신라(新羅), 백제(百濟) 등 고대국가(古代國家)의 건축물(建築物)은 목조(木造)의 수명 때문에 잔존(殘存)하지 못하고 노후(老朽)되어 도괴되거나 소실(燒失)되어 기둥초석(礎石)만 남아있고 기존(既存)건물(建物)들 대다수(大多數)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중창(重創)된 것으로 거의 석조문화재(石造文化財)가 주(主)가 되는 반면(反面)에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목조건축물(木造建築物)이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의 대부분(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 2. 법률상(法律上) 특성(特性)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第4條에서 第8條에 이르는 지정(指定)의 행위(行爲)가 이루어지면, 법상(法上)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로 성립(成立)된다. 법적(法的) 절차(節次)는 차치하고 우선 이렇게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로서의 가치(價値)가 있다고 인정(認定)되는 것은 관계전문가(關係專門家)의 수차(數次)에 걸친 실제조사(實際調査)와 연구(研究)가 선행(先行)되

고,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심의(審議)를 거친 학술적(學術的) 공인(公認)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또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로서의 성립(成立)을 위(爲)한 대전제조건(大前提條件)이라 할 것이다.

이 조건(條件)이 충족(充足)되면 지정행위(指定行爲)가 법적(法的) 절차(節次)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지정(指定)은 국가(國家)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일방적(一方的), 명령적(命令的) 행위(行爲)로 지정(指定)에 대(對)한 이의(異議)나 거부(拒否)는 인정(認定)되지 않는다. 또한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로 지정(指定)되면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한 개인(個人)의 소유권(所有權)에는 변동(變動)이 없지만, 민족공유(民族共有)의 유산(遺産)이란 문화재(文化財)의 특성(特性)에 따라 문화재(文化財)는 공물(公物)이 된다. 공물중(公物中)에서도 보존공물(保存公物)로 그에 대(對)한 손상(損傷), 소멸(消滅)은 어떠한 이유(理由)로든 인정(認定)되지 않는다.

바로 문화재(文化財)가 이러한 보존공물(保存公物)이라는 특성(特性)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所有者)에게 선량(善良)한 관리자(管理者)로서의 주의의무(注意義務)를 원칙(原則)으로 소유권행사(所有權行使)에 일정(一定)한 제한(制限)을 주고 있는 것이다.

### 三. 문화재보존상(文化財保存上)의 문제점(問題點)

#### 1. 문화재피해(文化財被害)의 요인(要因)

문화재(文化財)에 손상(損傷)을 주는 것은 자연적(自然的)인 것과 인위적(人爲的)인 것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자연적(自然的)인 것은 비바람, 뜨겁고 찬 것 등 기후(氣候)에 영향(影響)을 받아 마모, 변질, 노후되는 것으로 이것은 재료(材料)에 따라 그 손상(損傷)의 정도(程度)나 수명(壽命)을 달리하고 있으며 과학적(科學的)인 보존기술(保存技術)로서 효율적(效率的)인 보존관리(保存管理)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問題)인 것이다.

종전(從前)에는 이에 대한 과학기술(科學技術)이 발달(發達)되지 못하여 자연상태(自然狀態) 그대로 두는데 그쳤으나, 오늘날에는 고도(高度)로 발달(發達)한 기술(技術)의 힘을 빌어 인공환경(人工環境)을 만들고 다각적(多角的)인 보존방법(保存方法)으로서 효과적(效果的)인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 인위적(人爲的)인 피해(被害)로서 중요(重要)한 몇가지 요인(要因)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시대별(時代別) 문화(文化)의 상이(相異)한 특성(特性)이 전통문화(傳統文化)를 전승(傳承)시키지 않고, 전래(傳來)의 문화(文化)를 파괴하거나 소멸시키고 새로운 문화(文化)에 맞는 가치추구(價值追求)와 양태확립(樣態確立)에 치중(置重)하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例)를 들어 삼국시대(三國時代)에 각(各) 국가별(國家別)로 특유(特有)한 문화(文化)를 형성(形成)하였으나 신라(新羅)가 통일(統一)하면서 각(各) 국가(國家)의 독립(獨立)된 문화(文化)가 융화(融和) 발전(發展)하여 통일이전(統一以前)의 문화(文化)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文化)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삼국(三國)이 모두 불교문화(佛敎文化)에 기반(基盤)을 두었기 때문에 삼국시대문화(三國時代文化)가 고려(高麗)까지 전승(傳承)되었지만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성리학(性理學)인 유교를 숭배하고 배불정책(排佛政策)에 의해 전대(前代)의 문화(文化)와는 상이(相異)한 문화(文化)를 이룩했다. 이와같은 사회변천(社會變遷)에 따라 부분적

(部分的)인 전통(傳統)의 단절현상(斷切現象)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문화재(文化財)의 피해(被害)도 다소(多小)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두번째 문화재(文化財)가 전화(戰禍)에 의해 파괴, 소실등의 피해(被害)를 입게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歷史)를 보면 내외란(內外亂)이 상당히 빈번하였으며 이로 인한 문화재(文化財)의 피해(被害)가 상당히 컸다. 물론 이와 같은 전란(戰亂)으로 인한 전적지(戰蹟地)등 새로운 문화재(文化財)를 만들게 된 요인(要因)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피해(被害)의 정도(程度)는 큰 것이다.

세째로 일제점령시(日帝占領時)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재(文化財)의 도굴(盜掘), 해외 반출문제(海外搬出問題)가 있다. 일제식민지(日帝植民地) 당시(當時) 일인(日人)들이 우리나라의 고분(古墳)을 마구 파헤쳐 귀중(貴重)한 문화재(文化財)들을 일본(日本)으로 실어 가버린 이래 해방(解放)이후까지 도굴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을 위(爲)해서는 큰 문제(問題)라고 할 것이다.

## 2. 산업화(産業化)와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

문화재(文化財)란 개념은 어떤 의미(意味)에서는 산업혁명(産業革命)이후 영국(英國)에서 천연자원(天然資源)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연의 파괴와 역사적(歷史的) 문화유산(文化遺産)의 손상(損傷)·파괴(破壞)를 우려한데서 발생(發生)된 보호정책적(保護政策的) 개념(概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보호개념(保護概念)은 산업화(産業化)에 수반되는 도시화(都市化)·기계화(機械化)·각종(各種) 공해(公害)로 인하여 생활환경(生活環境)이 삭막해지고, 전통(傳統)을 단절(斷切)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화(産業化)에 대(對)한 개념(概念)으로서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은 자연자원(自然資源)의 보존(保存)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대두되었다. 이는 국토개발(國土開發)에 있어서 국가(國家)가 지닌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등의 자연자원(自然資源)과 한민족으로서 창조(創造)한 고귀(高貴)한 문화유산(文化遺産)을 그 가치(價値)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保全)하는 것이 중요(重要)한 과제(課題)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과 자연자원보호(自然資源保護)가 항상 산업화(産業化)나 국토개발(國土開發)과 반드시 역행(逆行)하는 관계(關係)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산업화과정(産業化過程)은 민족주체성(民族主體性)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推進)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민족(自己民族)의 문화적(文化的) 주권(主權)이 우선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 민족적(民族的)인 문화주권(文化主權)의 행사(行使)가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로 나타나는 것이다.

## 四,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의 기본방향(基本方向)

### 1. 기본원칙(基本原則)

문화재(文化財)는 전통문화(傳統文化)를 표현(表現)하는 고유(固有)한 가치(價値)를 가지고 있으며 재생산(再生産)이 불가능(不可能)한 유한(有限)한 것으로 각각(各各)의 특성(特性)과 함께 역사성(歷史性)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풍조(風潮)로서의 문화재보존(文化財

保存)은 큰 의의(意義)를 가지지 못하고 꾸준한 조사(調查)·발굴(發掘)·연구(研究)와 함께 지속적인 보존관리(保存管理)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에 관한 국민(國民)의 이해(理解)는 상당히 깊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경제발전(經濟發展), 국토개발(國土開發)에 조급한 나머지 문화재(文化財)의 파괴 등을 문제로 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적(經濟的)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어느 정도(程度) 달성(達成)하였고, 이제는 그에 대(對)한 부작용(副作用)에 대하여 논의(論議)하게 되는 시점(時點)에 이르렀기 때문에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도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그 중요도(重要度)를 높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文化財)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基本原則)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로 현상불변경(現狀不變更)의 원칙(原則), 둘째로 그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의 유지·존속에 주안점을 둔 관리(管理), 보수(補修), 셋째로 그 공개전시(公開展示)에 의한 활용(活用)과 아울러 네째로 문화재(文化財)의 조사(調查), 연구(研究)의 기능(機能)을 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이 가능(可能)하다 할 것이다. 이 중에서 문화재(文化財)의 조사(調查), 연구(研究)는 그 보존(保存)을 위한 가장 중요(重要)한 조건(條件)이며 기초(基礎)이기도 하다.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은 고도(高度)의 전문적(專門的) 지식(知識)과 기술(技術)을 필요로 하며 그 가치(價値)의 감정(鑑定), 평가(評價)에 있어서의 역사학(歷史學)·미술(美術)·지질학(地質學), 그 보존(保存)에 있어서 자연과학적(自然科學的) 지식(知識)과 공학적(工學的) 전문기술(專門技術)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종합과학(綜合科學)의 전문가적(專門家的) 노력(努力)의 협동(協同)이 요청(要請)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文化財)의 조사(調查)·연구(研究)는 그 보호(保護)를 위해 법적(法的)으로 「직권(職權)에 의한 조사(調查)」, 즉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명령(命令)에 따라서 그 소속공무원(所屬公務員)이 조사(調查)에 임할 수 있고, 비지정문화재(非指定文化財)에 대해서도 지정(指定)을 위(爲)한 조사(調查)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일반학술기관(一般學術機關) 등에서 조사(調查)를 하고자 발굴(發掘)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허가(許可)를 받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에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범국민적(汎國民的)인 문화재애호사상(文化財愛護思想)이다. 널리 국민(國民) 모두가 문화재애호(文化財愛護)를 생활화(生活化)하고 자발적(自發的)으로 문화재(文化財)를 사랑하는 문화풍토(文化風土)가 조성(造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2. 보존방안(保安方案)

해방(解放)과 함께 독립(獨立)이 되자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사상(思想)의 고양(高揚)과 민주주의이념(民主主義理念)이라는 시대적(時代的) 흐름이 크게 작용(作用)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自己)것을 찾고 전통문화(傳統文化)를 발굴(發掘), 계승(繼承)하고 발전(發展)시켜야 하겠다는 것은 독립국가(獨立國家)의 국민(國民)으로서 당연한 욕구(欲求)였던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最近)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의 문제(問題)가 크게 대두된 것은 국토개발(國土開發)과의 관련(關聯)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0년 이후 개발(開發)과 도시화(都市化)라고 하는 이 시대(時代)의 흐름은 그 규모(規模)가 거대(巨大)하기 때문에 문화

재보존(文化財保存)은 점적(點的) 보존(保存)의 단계(段階)에서 면적(面積) 보존(保存)의 문제(問題)로 확대(擴大)되었고, 그것은 도시계획(都市計劃)이나 국토계획(國土計劃)에서 중요(重要)한 전환점(轉換點)을 맞게 되었다.

구체적(具體的)인 방안(方案)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첫째로 문화재(文化財)나 자연경승지(自然景勝地)를 중심(中心)으로 한 관광개발(觀光開發)은 지역사회개발(地域社會開發)에 큰 역할(役割)을 담당하게 되므로 이를 위(爲)한 기반시설(基盤施設)의 확충필요(擴充必要)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원(資源)으로서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이 주(主)이고, 그를 위(爲)한 활용시설(活用施設)은 종(從)으로서의 테두리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大前提)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문화재(文化財)가 관광개발(觀光開發)을 통한 지역개발(地域開發)의 핵(核)이 되긴 하지만 지나친 개발(開發)은 문화재(文化財)를 파손하게 되므로 실리(實利)만을 추구(追求)하는 것은 배제(排除)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문화재(文化財)를 보존(保存)하는 것은 한 시대(時代)의 특정목적(特定目的)을 위한 것만이 아니며, 선조(先祖)로부터 물려받아 잘 보호(保護)하고 가꾸어서 후손(後孫)에게 전승(傳承)해야 할 자산(資産)이기 때문에 국가(國家)와 민족적(民族的)인 과업(課業)으로서 민족문화(民族文化)를 창조(創造)하는 기틀이 된다.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文化財)의 성격(性格)에 따른 방안(方案)이다. 문화재중(文化財中)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무형(無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으로 역사상(歷史上) 또는 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이기에 이의 보전방안(保全方案)은 전승(傳承)을 위(爲)한 제도적(制度的) 측면(側面)을 주(主)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가옥(家屋)을 제외한 민속자료(民俗資料)는 풍속(風俗), 생활양식(生活樣式)의 변화(變化)에 맞추어 적절(適切)한 보전대책(保全對策)을 수립(樹立)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別途)의 보수(補修)와 같은 물리적(物理的)인 방법(方法)은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서적(書蹟), 고문서(古文書), 회화(繪畫), 조각(彫刻), 공예(工藝)등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원형(原形)의 최대한(最大限) 보존(保存)을 위(爲)한 보수(補修)와 보관장치(保管裝置)의 개선(改善) 등 여러가지 조치(措置)가 강구(講究)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지(城址), 사지(寺址), 요지(窯址), 사적지(史蹟地), 경승지(景勝地), 동(動)·식물(植物) 등의 기념물(記念物)은 토지이용(土地利用) 및 자연환경보존(自然環境保存)과 밀접(密接)한 관계(關係)가 있으므로 그 자체(自體)의 보존(保存)과 함께 관련(關聯)된 구역(區域)까지 광대(廣大)한 범위(範圍)의 보전방안(保全方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당해 문화재자체(當該 文化財自體)뿐 아니라 주변(周邊)의 경관보존(景觀保存)까지 중요시(重要視)하여야 할 것이다.

세번째 문화재(文化財)의 규모(規模)를 가지고 살펴보자.

문화재(文化財)는 대규모(大規模)의 문화재(文化財)에서부터 소규모(小規模)의 문화재(文化財)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規模)는 다양(多樣)하다. 대규모(大規模) 문화재(文化財)는 대개 입지성(立地性)이 강하여 이동이 곤란하며, 외부(外部)에 노출된 관계로 자연적(自然的)인 기후조건(氣候條件)이나 인위적(人爲的)인 파손이 많아지게 되므로 그 원형(原形) 보존(保存)을 위(爲)한 관리(管理)를 잘 하여야 할 것이며 일정기간(一定期間)마다 문화재(文化財)의 보존상황(保存狀況)을 조사점검(調査點檢)하여 효율적(效率的)으로 보존(保存)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규모(小規模)의 문화재(文化財)는 도난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관장소(保管場所)의 환경(環境)을 기술적(技術的)으로 검토(檢討)하여 과학적(科學的) 보존관리(保存管理)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네째로 입지성(立地性)이 있는 문화재(文化財)의 효율적(效率的) 보존(保存)을 위(爲)한 보존지구(保存地區)의 확대설정(擴大設定)이 요구(要求)된다.

문화재(文化財) 자체(自體)는 물론 주변환경(周邊環境)의 보존(保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찰, 사적지 성지, 경승지(景勝地) 등은 원형보존(原形保存)의 개념에 환경보전개념(環境保全概念)을 집어넣어 광역(廣域)의 지역(地域)을 보존지구(保存地區)로 확대(擴大)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多數)의 문화재(文化財)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사적지, 고분지역등은 보호구역을 확대지정(擴大指定)하여 토지이용(土地利用)을 적절히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次元)에서 정부(政府)에서는 84년 8월 사찰문화재의 보호구역을 반경2km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文化財保護法施行規則)을 개정(改正)하였고, 전통건조물의 집단적 보존을 위한 보존지구설정(保存地區設定)을 할 수 있도록 전통건조물보존법(傳統建造物保存法)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설정(政策設定)의 배경(背景)은 문화재(文化財)를 중심(中心)으로 한 점(點)(spot)적(的) 보호(保護)의 개념에서 면(面)(area)적(的) 보호(保護)의 개념(概念)으로 확대(擴大)하는데 따른 것이라 하겠다.